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9. 4(수) 10:00

#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6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 2. 제안이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무게를 제한하는 등 종량제봉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류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3항)
- 나. 5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명칭 변경(안 제9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3항, 별표 2)
- 라. 특수규격봉투 구입처를 동주민센터, 판매소로 확대(안 제18조제3항)
- 마. 폐비닐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명시(안 별표 1)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세부 규정과 페비닐류 배출요령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폐기물 처리에 편리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3항)

- 안 제2조에서 관련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안 제4조제2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서울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함

#### 2) 50리터 이상의 일반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무게 제한 규정
  - 일반 종량제봉투 50리터: 장당 13킬로그램 이하
  - 일반 종량제봉투 75리터: 장당 19킬로그램 이하
  - 특수규격봉투: 장당 20킬로그램 이하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명칭 변경(안 제9조 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3항, 별표 2)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과 동일하게 용어를 수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함
- 4) 특수규격봉투 구입처를 동주민센터, 판매소로 확대(안 제18조제3항)
- 5) 폐비닐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명시(안 별표 1)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종량제 봉투 및 폐비닐류 배출요령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폐기물 처리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

# 관계법령

##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